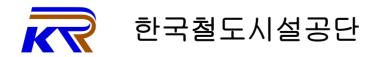


KR A-06010

Rev. 1, 17. December 2014

터널방재설비 일반사항

2014. 12.





REVIEW CHART

개정 번호	개정 일자	개정사유 및 내용(근거번호)	작성자	검토자	숭인자
0	2012.12.5	설계기준 체계 전면개정 (설계기준처-3537, 12.12.5)	이광연	석종근 고재운	김영우
1	2014.12.17	이용자 중심의 승강장 설비 개선 방안 등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개정 (설계기준처-3783호, '14.12.17)	조성찬	김대원 유승현	이동렬



목 차

1.	일반사항	1
2.	설계 고려사항	1
3.	TAB 수행계획 및 안전성 분석	1
RI	ECORD HISTORY	2



1. 일반사항

(1) 기본방향

방재설비의 계획과 설계는 「철도건설법」, 「철도건설규칙」, 「철도안전법」, 「도시 철도건설규칙」,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(2) 적용범위

환기설비, 제연설비, 배연설비, 배수설비, 소방(기계)설비, 자동제어설비, 승강설비, 방화(연)문 등 터널방재(기계)설비의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2. 설계 고려사항

- (1) 본선터널은 터널방재설비를 검토 또는 계획하여야 한다.
- (2) 본선터널 등은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 및 「도시철도건설규칙」 등에 따라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고, 안전성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(3)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(4) 본선터널 등은 통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, 에너지 절약형 장비와 시스템 으로 계획하여야 하다.

3. TAB수행계획 및 안전성분석

- (1) 설계단계 터널방재설비의 TAB는 터널내, 연직갱 및 경사갱내 등에 설치될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공기(환기, 배연, 제연), 물분배계통, 소음, 진동, 자동제어계통 등에 대한 TAB(Testing, Adjusting & Balancing) 시행을 고려하여야한다.
- (2)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에 의거 관련규정에 따라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을 지하역 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- (3) 터널방재설비는 안전성분석(QRA) 분석결과에 따라 사고예방시설물, 사고피해감소시설물, 대피촉진시설물, 구조축진시설물, 기타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

RECORD HISTORY

Rev.0(12.12.5)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,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(코드별)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둠.

Rev.1('14.12.00) 이용자 중심의 승강장 설비 개선 방안(설계기준처-3245, '14.11.05), 설계 기준 개선과제(단기) 및 관련부서의 개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철도설계 지침 및 편람(건축편) 개정(개정된 관련법 및 기준 반영)